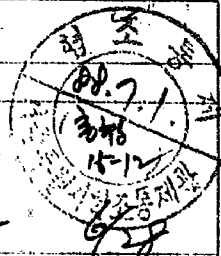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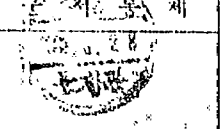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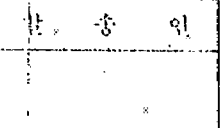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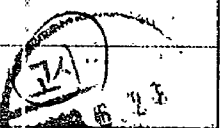


기안용지

(전화: 731-6346)

분류기호 문시번호	시설30312-277	시행장 특별취급	시 장
보존기간	①영·출양구. 10.5.3.1.	<p style="text-align: center;">기안용지</p> <p style="text-align: center;">법무담당관심사필 협조통계행정과장</p>	
수신처 보존기간	10년		
시행일자	88.6.		
보조 기 관	도시계획국장 전 결 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1계장	합 계	
기안책임자	박필용(김병대)	합 계	
상 수 심 검 조	각 안 참 조	합 계	
세 목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	합 계	
(제1안) : 내부결재			
1. 도정30310-41287('87.12.9)호 및 도정30310-14251('88.5.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용산구청장과 구로구청장으로 부터 용산구 한강로2가 196과 구로구 고척동 50-61일대의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 결정 요청이 있어 관련사항 검토하여, 우리시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88.6.17)에 상정 심의 가결되었기,			
3.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코자 합니다.			
첨부 : 1) 관계서류 1건. 2506			

2) 고시안 1부. 끝.

(제2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시설계획과장

제목 : 같음.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2부. 끝.

(제3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라. 게재내용 : 별첨.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제4안)

수신 : 용산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같음.
1. 도정30310-41287('87.12.9)호와 관련임.
2. 위호로 귀 구관내 한강로 2가 196의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 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도면정리 및 관련부서에 알리기 바랍.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계5안)
수신 : 구로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같음.
1. 도정30310-14251('88.5.10)호와 관련임.
2. 위호로 귀 구관내 고척동 50-61일대의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 결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고척동 51-1의 일부 편입시 기존 건물이 건축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므로 제척하여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으니, 도면정리 및 관련부서에 알리기 바라며,
3.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바랍.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계6안)

수신 : 수신처 참조 478

발신 : 과장

제목 : 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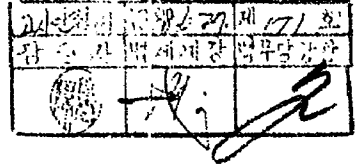
1. 우천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2부. 끝.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상공과장.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결정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곤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 6. 28.

서울특별시 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m ²)	비 고
기정	시 장	용산구 한강로 2가 196	922	
변경	"	"	0	폐 지
기정	"	구로구 고척동 50-47일대	3,960	
변경	"	" 50-61일대	4,011	증)51m ²

나. 도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곤할구청 비치도면과
같음. 끝.

위치도

S=1:3000

시장변경결정

A=922m²→0



위치도

S=1:3000

시각변경결정

A=3960M² > 4011M²

범례

구분	내용	면적(M ²)	비고
변경전		3960	(경 5.6경향)
변경후		4011	(경 5.1M ²)

